

● 제315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347

### I. 동의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2. 10. 17.
- 다. 회부일 : 2022. 10. 2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는 발달 지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 치료 지원, 연계 등을 통해 영유아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는 전문성, 경험, 인적·물적 자원 등이 축적된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발달 지연 아동과 그 가정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 2) 위탁유형 : 사무위탁
- 3) 위탁기간 : 3년<sup>1)</sup>(2023. 3 ~ 2026. 2)
- 4)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사무의 위탁)

### ○ 추진 필요성

-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는 민간의 전문 지식과 특화된 기술이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되며, 위탁사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16>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0.7.16>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4., 2020.7.16>

필요한 사업으로, 특히 영유아 발달관련 검사 및 치료 경험이 있는 인력이 운영하는 민간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5) 위탁사무

-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 6) 위탁사무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2층
- 규모 : 전용면적 약 300㎡
- 시설현황 : 상담실, 검사실, 대기실, 교육실, 사무실 등
- 인력현황 : 16명
  - 센터장 1, 발달 검사 및 상담인력 13, 행정 인력 2

#### 7) 수탁기관 선정방법 : 신규 민간위탁(공개모집)

#### 8) '23년 소요예산(안) : 1,500백만원

- 예산과목 : 1,500백만원(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9개월분
  - 인건비 707백만원/ 운영·사업비 482백만원/ 센터수선비 311백만원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반영 예정

#### 다. 합 의

- '22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조건부 적정('22.9.8)
- '22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후속조치 심의 : 적정('22.10.5)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4조의3제1항<sup>2)</sup>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위탁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①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 3)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4)에서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에 관한 사무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음.
- 또한 「민간위탁조례」 제4조5) 및 제6조6) 등에서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3)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4)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12. 12. 31., 2014. 5. 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2014. 5. 14.>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유아 발달 관련 검사 및 치료지원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특화된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7)에서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
-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여지가 있어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도록 조건부 적정 결과를 받아 「민간위탁조례」 제11조8)에 따라 위탁일로부터 3년간 위탁하게 됨.

---

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18., 2009. 7. 30., 2014. 5. 14., 2019. 9. 26.>

1.~8. (생략)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7)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0.7.16>

### 3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유아의 뇌발달에 필수적인 다양한 경험과 자극이 제한됨에 따라 아동의 발달 지연 및 심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 그동안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은 바우처를 통한 정부 보조를 통해 민간시설에서 담당해왔으나, 이미 발달지연(또는 발달경계) 판정을 받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예방의 기능보다는 사후 치료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치우쳐 있으며, 바우처 사업의 수익 저하로 인한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 하락 문제로 인한 신뢰성 저하 등 문제점이 있었음.
- 따라서 조기 발견부터 연령별 적정 발달 검사 및 진단을 수행하고,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을 통한 영유아 건강한 발달 증진이라는 사회 공익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동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제1항<sup>9)</sup>에 따라 ‘서울아이

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①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발달지원 센터'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10)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소관 사무로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11)에서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영유아 발달 검사 및 상담 사업 관련하여 기존의 민간부문 영역이 존재하는 바, 기존 민간시설의 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경쟁이 아닌 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2021.12.30>

10)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11)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